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28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김선민·박은정·김준형

조 국・황운하・이해민

신장식 · 서왕진 · 박상혁

김원이 · 장종태 · 이병진

강경숙 • 문진석 • 서영석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

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 나.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5항제5호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 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

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함(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운용방안 제5조제5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의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비용을보조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하며, "공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를 "평가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공공보건의료기금

- 제19조의2(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 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2.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1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 2.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충원

- 3.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제공
-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 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 ① ~ ③ (생 략)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4
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	
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	
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	<u>하여야 한다</u> .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②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
	건의료기금의 운용방안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 ① ~ ④ (생 략)	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⑤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생략)

<신 설>

5. (생략)

⑥ ~ ⑧ (생 략)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의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 · 물적 교류 등 협력 체

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현행과 같음)

5.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

안•결산 및 평가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병상을 갖춘 공공보건의

료기관을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

상으로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있다. <신 설>

<신 설>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 약지 거점의료기관, -----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 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 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 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 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 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 다.

제15조(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평가) ① -----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 ----- 평가하여 야 한다.

②	
	공
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
점의료기관,	

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의료취약</u> 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 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u>신</u> 설> <신 설>

③ <u>공공보건</u>
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
기관,

④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공공보건의료기금
제19조의2(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
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2.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신 설>

<신 설>

-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1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 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 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 2.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충원
 - 3.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건의 료 제공
 -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 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 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
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의 지원